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하늘도시A12블록
■ 공급대상 : 8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445세대 (특별공급 291세대, 일반공급 1,154세대)
■ 시행사 : (주)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 (주)대우건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시 견본주택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비접촉체온계)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상담 전화(☎ 1544-4030)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주)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사업주체" 또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인")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복 계약시 기존 주거주택의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0.11.27.(금)]이며, 이는 청약 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0.11.27.(금)] 현재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하며 외국인 및 법인의 경우는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최하층 우선 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0.11.27.(금)]을 기준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예비당첨임차인 계약체결 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0.11.27.(금)] 기준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어야하고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특별공급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0(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주택 특별공급분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을 준용하여,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특별공급 요건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하므로,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소득이 이 임차인 모집공고상의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 요건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안내해드리는 곳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1,154세대)은 총 세대수(1,445세대)에서 특별공급(291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또는 당첨 후 미계약 시 발생하는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소득, 자산, 나이, 혼인 합산 기간 등의 일부)을 완화하여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 규정[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무주택세대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을 적용합니다.
· 이 주택의 견본주택 개관은 [2020.11.27.(금)] 10:00입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청약 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으며, 고령자, 노약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일에 당사에 방문하신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된 기기를 통하여 청약홈을 통한 청약 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이 공고문은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20/unseo)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금지

· 임차인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임대차계약에 정해진 위약금징구, 위약금징구를 위한 계약금의 몰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타입과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안내(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보증채무이행방법 (약관 제6조)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안내하고,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②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한다)이 계속사업을 원하고, 공사가 시공자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계속사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③ 제2항의 시공자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공사는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환급이행 또는 임대이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제1호의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환급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회신기한 이후에는 보증채권자가 이행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문화재 발견, 토지 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임대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 공사는 환급이행으로 이행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환급할 경우에는 제1조 제1호의 환급금액에서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계속사업】 제4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대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이행】 보증사고시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어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내역

■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허가과 – 25057호(2020.11.26)로 임차인 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하늘도시A12블록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7개동 총 1,445세대(특별공급 2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전용면적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세대수					입주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62㎡	62A	62.6200	19.5820	82.2020	39.1400	121.3420	-	-	-	204	204	2021년 8월
	62B	62.6200	19.5820	82.2020	39.1400	121.3420	71	43	28	-	142	
74㎡	74A	74.6600	22.8860	97.5460	46.6650	144.2110	-	-	-	63	63	
	74B	74.6200	23.6670	98.2870	46.6400	144.9270	44	26	17	-	87	
	74C	74.6100	24.0250	98.6350	46.6340	145.2690	-	-	-	112	112	
84㎡	84A	84.8300	25.4630	110.2930	53.0210	163.3150	-	-	-	384	384	
	84B	84.5100	26.7940	111.3040	52.8220	164.1250	-	-	-	105	105	
	84C	84.6900	26.0230	110.7130	52.9340	163.6470	-	-	-	225	225	
	84D	84.6600	26.9260	111.5860	52.9160	164.5020	31	19	12	-	62	
	84E	84.6700	30.2490	114.9190	52.9220	167.8400	-	-	-	2	2	
	84F	84.7200	25.9190	110.6390	52.9520	163.5920	-	-	-	59	59	
합계							146	88	57	1,154	1,445	

※ 실시설계 등으로 계약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시, 타입기준(62A/62B/74A/74B/74C/84A/84B/84C/84D/84E/84F)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신청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기준, 선택 조건별 상이) (단위 : 세대, 원)

타입	전용면적	공급 세대수	공급유형	임대보증금/납입시점			
				총액	계약금	잔금	월 임대료
					계약시	입주지정일	
62A	62.6200㎡	204	일반공급	81,000,000	2,500,000	78,500,000	242,000
62B	62.6200㎡	142	특별공급	73,000,000	2,500,000	70,500,000	214,000
74A	74.6600㎡	63	일반공급	100,000,000	2,500,000	97,500,000	253,000
74B	74.6200㎡	87	특별공급	89,000,000	2,500,000	86,500,000	228,000
74C	74.6100㎡	112	일반공급	100,000,000	2,500,000	97,500,000	252,000
84A	84.8300㎡	384	일반공급	119,000,000	2,500,000	116,500,000	262,000
84B	84.5100㎡	105		119,000,000	2,500,000	116,500,000	260,000
84C	84.6900㎡	225		119,000,000	2,500,000	116,500,000	261,000
84D	84.6600㎡	62	특별공급	106,000,000	2,500,000	103,500,000	235,000
84E	84.6700㎡	2	일반공급	119,000,000	2,500,000	116,500,000	261,000
84F	84.7200㎡	59		119,000,000	2,500,000	116,500,000	261,000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2,500,000원,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률(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 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유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계약시 표준형, 전환형1, 전환형2 중 임대조건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택한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 전환시 변경된 임대조건 상의 임대보증금에서 최초 계약시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이 잔금으로 산정됩니다.

· 계약금은 2,500,000원이며, 잔금은 전환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전환임대조건 (단위 : 세대, 원)

타입	전용면적	공급 세대수	공급유형	표준형		전환형 1		전환형 2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62A	62.6200㎡	204	일반공급	**81,000,000**	**242,000**	60,000,000	303,000	30,000,000	391,000
62B	62.6200㎡	142	특별공급	**73,000,000**	**214,000**	60,000,000	252,000	30,000,000	339,000
74A	74.6600㎡	63	일반공급	**100,000,000**	**253,000**	70,000,000	341,000	30,000,000	457,000
74B	74.6200㎡	87	특별공급	**89,000,000**	**228,000**	70,000,000	283,000	30,000,000	400,000
74C	74.6100㎡	112	일반공급	**100,000,000**	**252,000**	70,000,000	340,000	30,000,000	456,000
84A	84.8300㎡	384	일반공급	**119,000,000**	**262,000**	80,000,000	376,000	30,000,000	522,000
84B	84.5100㎡	105		**119,000,000**	**260,000**	80,000,000	374,000	30,000,000	520,000
84C	84.6900㎡	225		**119,000,000**	**261,000**	80,000,000	375,000	30,000,000	521,000
84D	84.6600㎡	62	특별공급	**106,000,000**	**235,000**	80,000,000	311,000	30,000,000	457,000
84E	84.6700㎡	2	일반공급	**119,000,000**	**261,000**	80,000,000	375,000	30,000,000	521,000
84F	84.7200㎡	59		**119,000,000**	**261,000**	80,000,000	375,000	30,000,000	521,000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 colspan="2">모집분야</th><th>자격요건</th><th>선정방법</th></tr>
<tr><td rowspan="3">특별공급</td><td>청년</td><td>•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0.11.27.(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td><td rowspan="3">•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이하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td></tr>
<tr><td>신혼부부</td><td>•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0.11.27.(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나)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td></tr>
<tr><td>고령자</td><td>•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0.11.27.(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나)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만 65세 이상인 사람
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td></tr>
</table>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0.11.27.(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110% 이하	2,909,662	4,817,790	6,189,587	6,848,976	7,632,189	8,353,491	9,074,793	9,796,095
120% 이하	3,174,176	5,255,771	6,752,276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5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100% 기준) * (N-8) ※ N→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제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 공급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청년, 신혼부부 등) 예비임차인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입주개시일까지 임차인 자격요건의 완화가 되지 아니하며 입주개시일 이후 시,군,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임차인 자격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일반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2020.11.27.(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0.11.27.(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감정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 예비당첨자는 한국감정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임차인 선정은 한국감정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에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100% 계약체결 시 잔여 예비입주자에게 후순위 순번을 부여하여 공실세대 발생시 순번에 따라 입주의사 확인 및 임차인의 자격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 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일반공급 전 주택형	1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은 되지 않으며, 한국감정원 인터넷청약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제2의3, 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 고령자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4. 공급일정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일반 및 특별공급	2020.12.02.(수) ~ 2020.12.03.(목) 08:00 ~ 17:30	인터넷접수 청약 Home(한국감정원)	10만원	일시: [2020.12.09.(수) 16시] 청약Home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이 주택은 청약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 한도가 청약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PC 청약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방법 참조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청약은 PC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청약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공고상 주택형(㎡)	62.6200	74.6600	74.6200	74.6100	84.8300	84.5100	84.6900	84.6600	84.6700	84.7200
청약식 약식표기	62A/62B	74A	74B	74C	84A	84B	84C	84D	84E	84F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2020.12.09.(수)] 16:00	한국감정원 청약Home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시기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평일 09:00~16:00 [2020.12.10.(목)]
· 환불대상 : 인터넷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장소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0.12.10.(목) ~ 2020.12.13.(일) 10:00 ~ 16:00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7-9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0.12.14.(월) ~ 2020.12.20.(일) 10:00 ~ 16:0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제출시 필요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o		2.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o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4.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o		5.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6.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청년		o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o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o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o	4. 사실증명원	· 소득이 없는 세대원
				o	5.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6. 임신증명서류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신혼	혼인 상태인 경우		o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o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o	3. 소득확인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o	1. 결혼 확인서류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o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o	3. 소득 관련 서류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공통 (해당자)		o	1. 임신증명서류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o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o	3. 비사업자확인각서	· 견택주택 비치
	고령자			o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o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o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o		2.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o		3. 대리인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0.11.27.(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 발급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o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o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o		3.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o		4.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5.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요청한 추가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o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당첨자 기준
	o		2.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o		3. 대리인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 발급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접수장소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703-596884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902)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임대보증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6.0%)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납부계좌는 입주시 별도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1년 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사업주체의 자산보관기관인 흥국생명보험(주)에 수탁하였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 (오백만원한도)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지체없이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공고 내용과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8년)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 당월분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납부일이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최초 익영업일까지 납부합니다. 또한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잔금 및 당월분 임대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6.0%)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를 준용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본 주택은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시행령」제34조의2(임대료)를 준용하여「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임대조건 상승률로 적용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입주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임대차계약에 정해지 위약금 징구, 위약금징구를 위한 계약금의 몰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동육아 나눔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운영은 인천시 중구청에서 20년 무상임대 사용예정으로 이에 대한 운영권은 20년간 인천 중구청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의 임대의무기간(8년) 이후 공동주택 매각시에도 무상임대로 사용 지속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임시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주거서비스는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시공사 브랜드명(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추후 입점자가 설치하는 식당 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인이 운영 및 관리할 예정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센터로 운영됩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계약시 입주자에게 별도의 융자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시공관련 문의 및 시공상 하자 관련 사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접수를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종합 안내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임대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 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임대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 내 레벨계획으로 인한 단차이가 있어 일부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과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 공사 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외벽은 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구부가 설치되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쓰레기이송설비,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T/L(천창)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자동크리넷시설(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이 계획(배치)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준공 후 입주 초기에는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사용 가능시

기는 관계기관 결정사항이오니, 이 점을 청약 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배수펌프 가동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내 배수구 및 환기 디퓨져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 모형 등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 공간, 에어매트 설치공간으로 인해 식재 종류 및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의 높이는 동별로 상이하오니 견본주택 내 모형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및 일부 저층세대 인근에 소방시설로 제연설비를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와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관련 도면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고, 아일랜드 식탁의 이동, 철거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동, 철거 시 온수분배기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이 통합 또는 개별 설치되므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세대 전/후면에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세대는 야간 보안등,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송풍기 설치로 주차구역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송풍기의 주기적인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 또는 벽체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은 기둥 디자인에 따라 설치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 2개층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2.3m, 주차공간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필로티, 휴게공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 노출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련하여 쓰레기 수거차량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맘스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화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단지모형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 및 주변에 설치된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 VII, 최대유효지반가속도 0.169g 이상입니다.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는 74㎡C, 84㎡A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임대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은 건립된 타입의 마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A, 62B, 74A, 74B – 74C 참고 / 84B, 84C, 84D, 84E, 84F – 84A 참고)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미포함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환기스위치,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입상관 포함)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자를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입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휴게, 놀이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홍보물 (카탈로그, 팜플렛) 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합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임대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시설 유의사항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주변으로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통행객들로 인한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에 따라 104동, 108동, 112동, 114동, 117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중계장치는 104동, 108동, 112동, 114동, 117동 옥상 및 지하 휀룸 등에 설치됩니다. 전파측정 후 설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관련 유의사항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계약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임대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상부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발코니 천장 높이는 전열교환기 설치로 인하여 견본주택보다 낮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일부 타입은 발코니의 일부가 전용면적에 산입되어 계산되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과 인접한 발코니의 경우 창호 유무에 따라 환기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정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에 난방용 온수분배기가 설치됩니다. 단, 84E타입은 복층세대로 1층과 2층 각각 별도 온수분배기 설치로 1층은 드레스룸내 일부 수납공간을 차지하고, 2층은 주방 싱크대 하부에 설치됩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내된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미러타입은 가구위치나 도어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커튼박스의 형태, 폭, 깊이는 설비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 단차는 물 넘침을 방지하는 단차이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벽체에 결로방지 단열재로 인한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세대 타입별 아트월 길이 및 위치, 벽체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구조에 따라 일부평형은 세탁실에 건조기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에 따라 일부평형은 입주시 주방발코니에 세탁기 설치 이후에는 실외기실 출입이 불편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단위세대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미터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이에 따라 선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장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다용도실 천장 내부에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 높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에는 환기용 장비 및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상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천장 점검구 및 환기장비, 세탁배수배관 유지보수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 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 및 환기덕트는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1, 발코니2, 샤워부스,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침실은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커튼박스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사양,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 액세서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가스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마감커버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수납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주방의 싱크대에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구 등의 위치는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으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 위치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실 루버 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 한하여 바닥배수구 및 선홈통이 설치되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층고가 기준층 대비하여 100mm 정도가 높아서, 견본주택(기준층)과 마감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평형은 세탁기 설치후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실외기실로 진입하는 통로가 협소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가전제품 등의 이사 및 배치시 사전에 각 평형의 특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평형 주방상부장의 경우, (렌지후드 측면) 세대 평형설계 특성상, 장 내부의 폭이 매우 좁은 경우(폭 200 이하)가 있어, 다소간 사용에 불편함이 예상됨을 사전에 인지 바랍니다.
· 84F(세대분리형) 타입의 경우 현관문이 2개 설치되어 세대 분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분리 사용시에는 법적 규정에 맞게 조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대피공간을 공유하며, 각 세대간 임의 진입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가 되어있으며 대피공간 내부에 들어가서 시건장치를 잠근 상태에서 진입시 내부에 갇히거나, 시건장치를 안할 경우 세대간 임의 진입할 수 있는 세대 특이사항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4F(세대분리형) 타입의 경우 세대간 벽체를 오픈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하셔야 하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84E 타입의 경우 드레스실 내부에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어 시스템 선반 하단의 한쪽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84E 타입은 아파트 EV홀은 통한 진입이 아닌 외부에 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EV홀 우편함 이용, 현관문 결로발생 가능성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의 사유로 시행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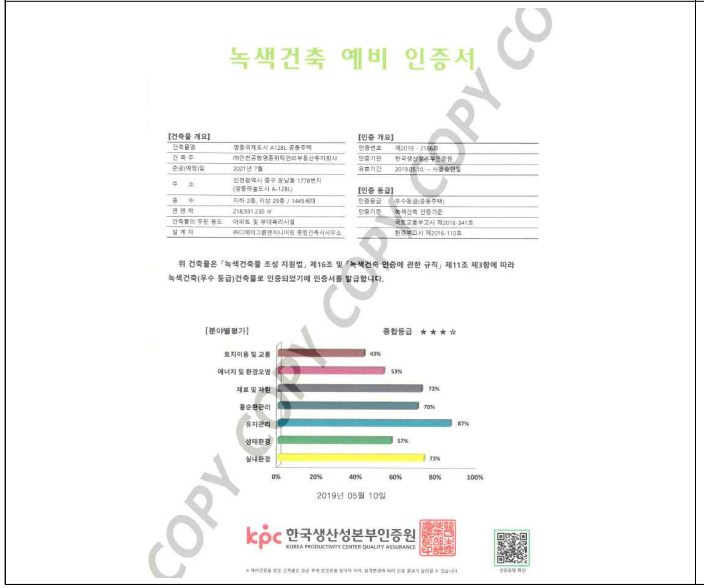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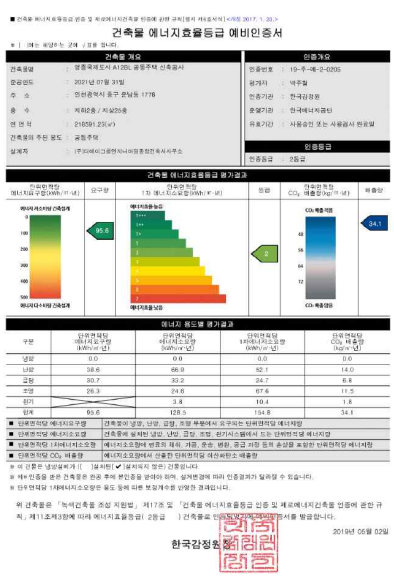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푸르지오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됩니다.
-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옥상, 지하 휀룸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측정 후 설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상의 비상동선을 이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될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제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DA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향 및 규격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평면 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지붕과 같은 층에 거실이 존재하는 세대는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지붕에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당 사업의 배정 초등학교는 인천운서초등학교입니다.
- 중학교는 영종국제도시 내, 고등학교는 영종도 내 배정되며, 학생 배치계획은 인천광역시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자동크린넷(쓰레기 자동지하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및 묘지공원(봉안당), 소각장, 집하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변전소, 종교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영종국제도시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개발(실시)계획, 경관상세 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본 사업지 및 주변 현황,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도로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고,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교통 혼잡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나목)	적용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 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변압기 사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 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349,497,000원	-
소방/통신감리	㈜지티엘이엔지	454,380,000원	-
전기감리	금정엔지니어링㈜	596,473,640원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시공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6406189)	㈜대우건설 (110111-2137895)	제이알투자운용㈜ (110111-4002921)	흥국생명보험㈜ (110111-0018443)

■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홈페이지** : www.prugio.com/house/2020/unseo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7-9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1544-4030